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1998. 9.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수정이유

-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행정기구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등 통폐합하고 이에 알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창군정원조례중개정안(의안번호 제28호)을 '98. 8. 22 일 제출 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 개정)중 정원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에 맞게 수정 하려는 것임.

■ 수정 주요골자

-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하여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부여

현 행 (686명)	개 정 (601명)	수 정 (6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본 청 : 215명 · 의회사무기구 : 16명 · 직속기관 : 132명 · 사 업 소 : 41명 · 읍 면 : 28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본 청 : 208명 (△7) · 의회사무기구 : 12명(△4) · 직속기관 : 119명 (△13) · 사 업 소 : 41명 · 읍 면 : 221명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총 계 : 601명

■ 수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 총 계 : 601명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u>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u>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본청</u> : 215명 2. <u>의회사무기구</u> : 16명 3. <u>직속기관</u> : 132명 4. <u>사업소</u> : 41명 5. <u>읍 면</u> : 282명 	<p>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본청</u> : 208명 2. <u>의회사무기구</u> : 12명 3. <u>직속기관</u> : 119명 4. <u>사업소</u> : 41명 5. <u>읍 면</u> : 221명 	<p>제2조(정원의 총수) 거창군의 <u>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u>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의 정원</u> : 589명 2. <u>의회사무기구의 정원</u> : 12명 <p><u>총 계</u> : 601명</p>